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5년 9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9월 24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70722
A	70719
C1	70720
C2	28719
C3	28720
C4	28721
C5	28722
I	90954
F	90955
V(변액보험)	B7911
W	B0713
S	AP356
C-CP(퇴직연금)	B064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2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7072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 6. 25	최초설정
2007. 8. 20	투자신탁약관 변경(기관 전용 클래스 추가 및 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
2009. 5.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2010. 3.16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등)
2010. 5. 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판매보수 인하)
2011. 1.10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이연판매보수 변경)
2014. 3. 14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S 추가)
2014. 6. 17	단독 운용 체제로의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 변경
2015. 3. 12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 W, C-CP(퇴직연금) 추가)
2015. 9. 24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 V(변액보험)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6 층 (대표전화: 02-3783-05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 위탁 및 투자자문]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가.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 당 편 드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업 무 위 탁 범 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 위탁

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주 요 주 주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 (100%)
회 사 연 혁	-1818 : J. Henry Schroder Co. Ltd 설립 -1954 : J. Henry Schroder Co. Ltd의 투자부서 설립 -1959 : 모회사인 Schroders Plc의 상장 -1985.3.7 : Somerled Limited 설립 -1985.6.17 : Somerled Limited에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상호변경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8.20 현재)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김영민	1964	상무	7	1조 577억	- 한국투신 국제펀드 운용 -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 슈로더투신(2007.8 ~) - 운용경력 19년 - 부산대 경영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2014년 6월 17일자로 팀(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 운용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도 단독운용인력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3년간 변동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낙균	주1) 2012.8.1 ~ 2014.06.16

주1) (팀)공동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 변경(기업공시서식 개정)일인 2012년8월1일자로 부책임운용인력 운용개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2014년 6월 17일자로 (팀)공동 운용 체제에서 단독 운용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일 이후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변동내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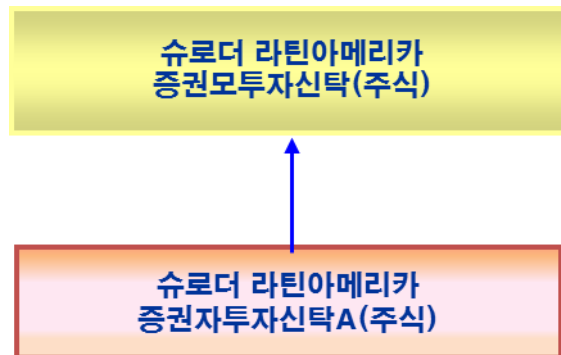
다.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앨런콘웨이(Allan Conway)
운용자산규모	US\$ 12.0 bn('14.12.31현재)
과거 운용경력	- SISF Emerging Markets fund (2004.11 ~ 현재) - SISF BRICs fund (2005.10 ~ 현재) - SISF Latin American fund (2004.11 ~ 현재) - SISF Middle East fund (2007.09 ~ 현재) - SISF Emerging Europe fund (2004.11 ~ 현재) - SISF Global Emerging Market Opportunities fund (2007.01 ~ 현재) - Schroder EM Commodities fund (2008.04 ~ 현재)

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7년 6월 25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1	2007년 6월 25일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C2	2011년 1월 10일	종류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3	2011년 1월 10일	종류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4	2011년 1월 10일	종류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5	2011년 6월 27일	종류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I	미설정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F	미설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특정금전신탁
V(변액보험)	미설정	자본시장법제251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W	미설정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 자
S	2014년 4월 24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C-CP(퇴직연금)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201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②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중에서 지속적인 초과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종목,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우월한 주주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슈로더의 내부 리서치를 기초로 상황식 기업분석을 통하여 종목을 선정합니다. 또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한 종목 선정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전략을 추구합니다.

③ 투자위험

주로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화표시 증권 중에는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가. (3) ② 환헤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유의사항

모투자신탁은 신흥시장인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의 증권 대비 더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신흥시장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전세계의 상품가격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각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모투자신탁	100% 이하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3)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외국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집합증권에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과 법 제 234 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7)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순자산 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 및 통화 또는 외국주식 및 외국통화에 연계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8)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9)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10)증권의 차입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파생결합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 4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12)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11)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11)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 제한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2011년2월3일까지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u>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u>, 법 234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 제19조제2호,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관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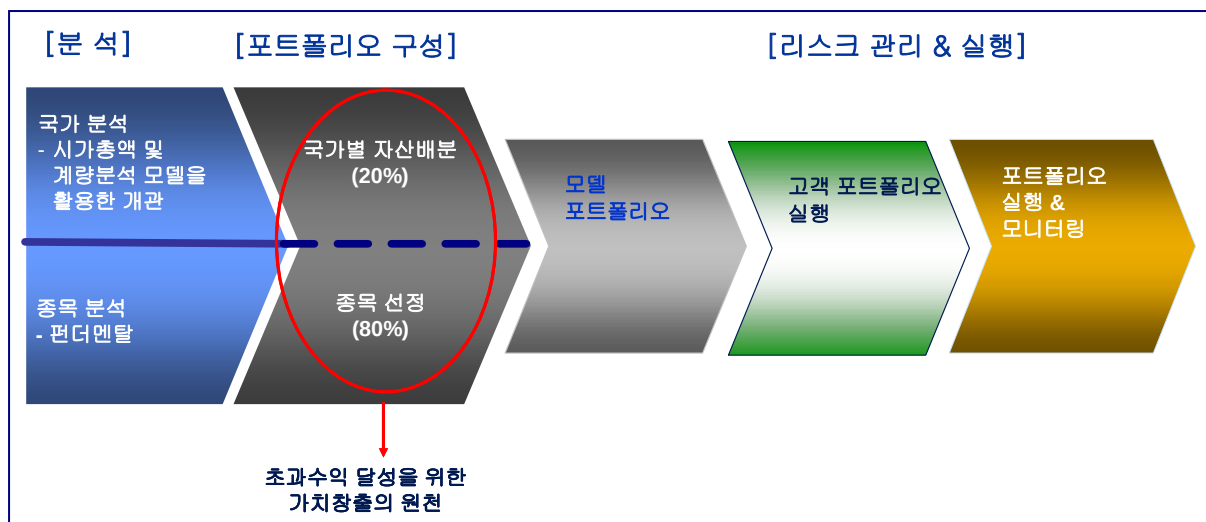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통해 투자됩니다.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세계 최대의 원자재 공급지역인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 상기의 지역의 국가에 속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상향식(Bottom-up) 기업분석 방식에 의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합니다.
- 다양한 스타일과 섹터에의 투자를 통해 시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특정 국가, 섹터 및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운용 방식을 추구합니다.
- 독자적인 리서치와 지속적인 사후 밸류에이션 모니터링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재구성을 실시합니다.

(2) 투자방침

① 운용 프로세스(모투자신탁 기준)



② 투자비중(모투자신탁 기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국가별투자비중(NAV대비, %)	51.08	31.05	10.08	2.64	2.84
	금융	필수소비재	산업재	텔레콤	소재 등

업종별투자비중(NAV대비,%)	30.09	19.62	10.84	9.80	27.36
------------------	-------	-------	-------	------	-------

주1) 종목군 및 업종별 투자비중은 '15.7월말 현재 수치로서, 투자비중에 대한 예시이며 수시로 조정됩니다.
 주2) 상기 투자비중은 해외주식 보유기준으로, 유동성 및 현금자산의 비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 NAV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③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모투자신탁 기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GDP(명목, 10억달러, 2013)	2,176.0	5,125.0	258.0	378.0	203.0
GDP 성장률 (YoY, %)	0.1	2.1	1.9	4.6	2.4
민간소비	0.9	2.0	2.2	4.4	4.1
고정자산투자	(4.4)	2.3	(6.1)	11.7	(2.0)
순수출 성장기여도 (%p)	0.0	0.5	3.2	(2.8)	0.3
물가상승(CPI, 전년 동기 대비)	6.3	4.0	4.4	2.9	3.2
기준금리(%)	11.8	3.00	3.00	4.50	3.50
국가신용등급(S&P)	BBB-	BBB+	AA-	BBB	BBB+
GDP대비 재정적자 (%)	65.2	50.1	13.9	38.0	20.7
GDP대비 경상수지 (%)	(4.2)	(0.5)	(1.2)	(5.2)	(4.1)
외환보유고(십억불)	374.1	193.0	40.4	44.9	60.1
대미환율	2.7	14.8	606.5	2,376.5	3.0
시가총액 (십억불)	338	188	54	31	17
PER (배)	11.9	20.8	16.5	14.6	15.3
EPS 성장률 (%)	(11.5)	(0.7)	3.6	1.0	55.4

주1) 출처: UN (GDP), IMF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OECD (GDP대비 재정적자), Bloomberg (기준금리, 외환보유고, 대미환율), KCIF (국가신용등급) 시가총액, PER 와 EPS 성장률은 MSCI 시장통계 기준
 주2) 기준일: 2014년 12월말

④ 참조지수(모투자신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미국달러표시로 산출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며, 10/40 표현은 포트폴리오의 10%이상을 단일자산에 투자할 수 없으며, 포트폴리오의 5%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규모의 총합이 포트폴리오 규모의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증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3)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 평가액의 미달러화 환산금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③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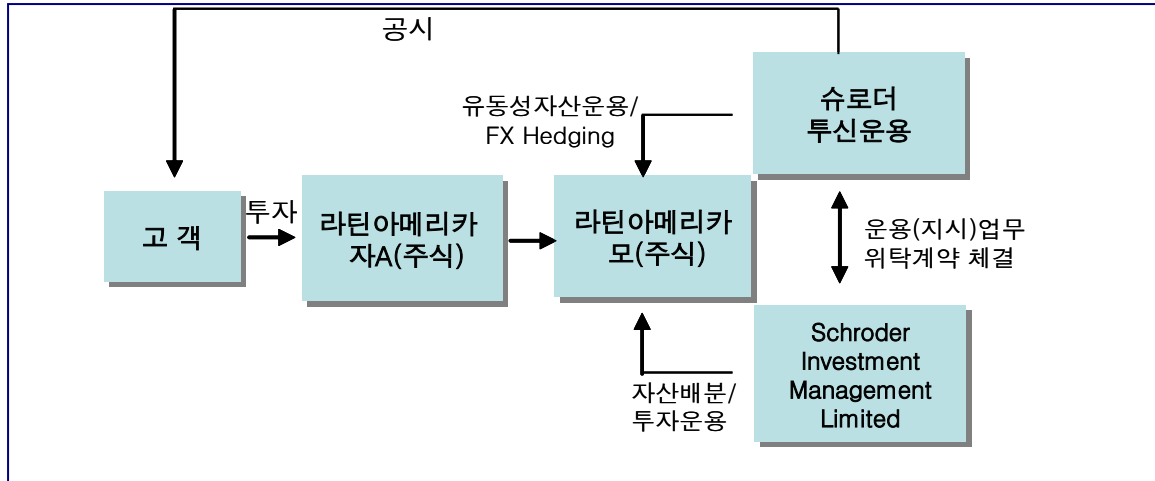
④ 환헤지 비용 (단위 : %,원)

목표 헤지비용	기준일(2015.6.24) 현재 헤지비용	환헤지 비용 (2014.06.25~2015.06.24)
---------	---------------------------	-----------------------------------

100%	97.28%	8,861,549
------	--------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통해 투자되며,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등에 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방법·체제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증권, 등급이 낮은 증권 및 이에 상응하는 등급이 없는 증권은 등급이 높은 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채무를 불이행 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오퍼레이션위험이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3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주1) 위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주2)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 퇴직연금 등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40%미만 투자하는 경우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가입자격: 제한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제 1 영업일(D)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 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미국인은 미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의 Rule 902 또는 1986년 미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이후 개정본 포함)(“미내국세법”)에서 정의된 자를 의미하며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의 Rule 902는 미국인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며, 개인이외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i) 미국 또는 그 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조합, (ii) (가) 수탁자가 전문수탁자이고 미국인이 아닌 공동 수탁자가 신탁자산에 관하여 단독 혹은 공동투자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의 수익자(또한 신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자(settlor))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미국인인 신탁 또는 (나) 법원이 신탁에 대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 수탁자가 신탁의 실질적 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신탁, (iii) (가) 모든 소득원으로부터의 국제적 소득에 대해서 미국조세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나) 미국인이 아닌 재산의 집행인이나 관리인이 재산의 자산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유된 투자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외국법률의 지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인이 집행인이거나 관리인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미국인”이란 표현은 (가) 그 관계인(participants)이 미국인이 아닌 이유로 그 운영자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포한 규칙 제4부의 일정 요건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상품 풀(commodity pool)에 미국인의 투자를 조장할 목적으로 형성되었거나 혹은 (나) 미증권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다만, 자연인, 재산 또는 신탁이 아닌 “인정된 투자자”(미증권법의 Rule 501 (a)에서 정의된 것을 말함)가 설립하고 소유한 경우는 제외함) 소극적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상품 풀(commodity pool), 투자회사 또는 기타 유사조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지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내국세법에 정하는 미국인이란 (i) 미국 시민이나 거주인, (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조직된 조합 또는 동 법상 조직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는 기타 사업체, (i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설립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이나 기타 사업체, (iv) 자금원과 상관없이 그 소득에 대해 미연방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재산권(estate), (v) (a) 미국 법원이 경영에 대해 주요 감독권을 행사하는 곳으로서 1인 이상의 미국인이 거의 모든 경영권을 가지는 신탁 또는 (b) 1996년 8월 20일 현재 존속하는 신탁으로서 미국인의 지위를 적법이 선택한 신탁을 의미합니다.

(6)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 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지급

구분	제 1 영업일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제 9 영업일(D+8)	제 10 영업일(D+9)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환매수수료	비교(지급시기)
A, C-CP(퇴직연금)	없음	
C1, C2, C3, C4, C5, I, F, V(변액보험), W, 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나)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다)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라)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상기 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수익증권부터 종류 C5 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제25조의3 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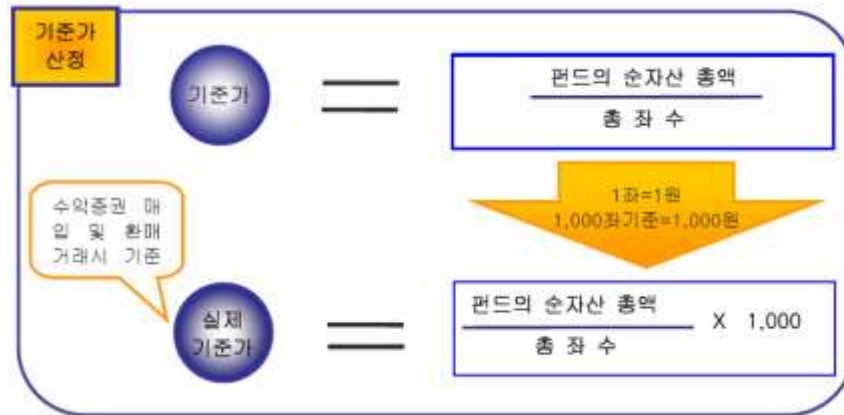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외화표시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외화표시비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 공통 적용)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 구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부과)	주1)납입금액의 1.20%이내(선취)	없음
C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없음	90일 미만 이 익금의 70%
C2	종류C1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3	종류C2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4	종류C3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C5	종류C4 가입고객으로 1년이상 경과한 자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 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 원 이상의 법인 고객, 특정금융투자신탁		
I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법인고객		
V (변액보험)	자본시장법제251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 자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주1)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후취)	
C-C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부과기준		S:3년미만 환매 시	환매시

주 1) 종류 A 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 S 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주3) 판매회사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증권 종류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보 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 용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8500	1.1000	0.0600	0.0200	0.0036	2.0336	2.2034	0.2346
C1	0.8500	1.5000	0.0600	0.0200	0.0000	2.4300	2.5987	0.2500
C2	0.8500	1.4000	0.0600	0.0200	0.0000	2.3300	2.5014	0.2484
C3	0.8500	1.3000	0.0600	0.0200	0.0000	2.2300	2.3667	0.1855
C4	0.8500	1.2000	0.0600	0.0200	0.0000	2.1300	2.2745	0.2428
C5	0.8500	1.1000	0.0600	0.0200	0.0033	2.0333	2.2030	0.2345
F	0.8500	0.0500	0.0600	0.0200	0.0000	0.9800	0.9800	0.0000
I	0.8500	0.3000	0.0600	0.0200	0.0000	1.2300	1.2300	0.0000
V(변액보험)	0.8500	0.0400	0.0600	0.0200	0.0000	0.9700	0.0000	0.0000
W	0.8500	0.0000	0.0600	0.0200	0.0000	0.9300	0.9300	0.0000
S	0.8500	0.3200	0.0600	0.0200	0.0000	1.2500	1.4177	0.2299
C-CP (퇴직연금)	0.8500	0.8000	0.0600	0.0200	0.0000	1.7300	1.7300	0.0000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6.25 ~ 2015.06.24]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6.25 ~ 2015.06.24]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작성 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산출하였으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A	343	802	1,287	2,621
	C1	266	818	1,396	2,962
	C2	256	788	1,346	2,864

	C3	243	747	1,277	2,727
	C4	233	718	1,230	2,632
	C5	226	696	1,193	2,558
	F	100	314	544	1,206
	I	126	393	679	1,495
	V(변액보험)	99	310	539	1,194
	W	95	298	517	1,147
	S	145	452	780	1,708
	C-CP(퇴직연금)	177	549	946	2,054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적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종류 C1 의 보수비용은 1 년 경과시마다 종류 C2, C3, C4 및 C5 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1 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작성 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종류 투자신탁의 경우 과거 추정치를 사용하였거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총보수 및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4) 종류 S 의 경우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현황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합계
라틴아메리카 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 E(채혼)	0.4500	0.6000	0.0350	0.0200	0.0000	1.1050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비용을 표기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합계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

사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종류 C-CP(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기(2014.06.25 - 2015.06.24)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7기(2013.06.25 - 2014.06.24)	삼일회계법인	적 정
제 6기(2012.06.25 - 2013.06.24)	삼일회계법인	적 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5.06.24)	(2014.06.24)	(2013.06.24)
운용자산	39,451,756,960	70,375,919,555	92,578,519,679

증권	39,309,083,295	70,332,977,592	92,504,888,46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2,673,665	42,941,963	73,631,21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16,445,066	910,322,439	702,259,859
자산총계	39,768,202,026	71,286,241,994	93,280,779,53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1,566,803	557,837,002	132,973,491
부채총계	111,566,803	557,837,002	132,973,491
원본	56,714,569,334	78,811,411,180	116,379,461,113
수익조정금	1,984,337,976	-1,250,830,889	-5,167,003,987
이익잉여금	-19,042,272,087	-6,832,175,299	-18,064,651,079
자본총계	39,656,635,223	70,728,404,992	93,147,806,04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4.06.25 - 2015.06.24)	(2013.06.25 - 2014.06.24)	(2012.06.25 - 2013.06.24)
운용수익	-13,225,566,426	8,900,271,323	-576,494,083
이자수익	9,828,184	17,873,816	33,117,07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3,235,394,610	8,882,397,507	-609,611,159
기타수익	106,190	29,508	281,189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88,000	151,000	187,000
당기순이익	-13,225,548,236	8,900,149,831	-576,399,89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8기(2015.06.24)		제7기(2014.06.24)		제6기(2013.06.24)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2,673,665	142,673,665	42,941,963	42,941,963	73,631,212	73,631,21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물론		271,360,000	271,360,000	666,180,000	666,180,000	669,750,000	669,75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39,037,723,295		69,666,797,592		91,835,138,467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9,037,723,295		69,666,797,592		91,835,138,46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예도유가증권미수금			316,445,066		910,322,439		702,259,859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50,346		159,893		375,337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16,294,720		910,162,546		701,884,52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9,768,202,026		71,286,241,994		93,280,779,538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11,566,803		557,837,002		132,973,49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11,474,087		557,674,536		132,771,153	
4. 수수료미지급금		92,716		162,466		202,33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11,566,803		557,837,002		132,973,491
자 본							
1. 원 본		56,714,569,334		78,811,411,180		116,379,461,11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발행회수 당기: 56,714,569,334 원)							
전기: 78,811,411,180 원							
전전기: 116,379,461,113 원							
(기준가격 당기: 699.23 원)							
전기: 897.44 원							
전전기: 800.38 원							
자 본 총 계			39,656,635,223		70,728,404,992		93,147,806,04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9,768,202,026		71,286,241,994		93,280,779,538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8기(2014.06.25-2015.06.24)		제7기(2013.06.25-2014.06.24)		제6기(2012.06.25-2013.06.24)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9,934,374		17,903,324		33,398,265
1. 이 자 수 익		9,828,184		17,873,816		33,117,076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06,190		29,508		281,189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71,494,870		9,121,943,788		5,332,249,59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71,494,870		9,121,943,788		5,332,249,59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3,406,889,480		239,546,281		5,941,860,75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01,062		183,724		316,044	
8. 기타거래손실		13,406,788,418		239,362,557		5,941,544,709	
운 용 비 용			88,000		151,000		187,00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88,000		151,000		187,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3,225,548,236		8,900,149,831		-576,399,89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33194898		0.11292971		-0.00495276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788	707	9	7	230	185	567	397
2013.06.25 - 2014.06.24	1,164	931	8	6	383	320	788	707
2012.06.25 - 2013.06.24	1,683	1,430	9	9	528	501	1,164	931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중A(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642	509	7	5	172	122	477	289
2013.06.25 - 2014.06.24	915	660	6	4	278	208	642	509
2012.06.25 - 2013.06.24	1,311	1,026	6	5	403	349	915	660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중C1(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0	0	0	0	0	0	0	0
2013.06.25 - 2014.06.24	0	0	1	0	1	0	0	0
2012.06.25 - 2013.06.24	0	0	0	0	0	0	0	0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중C2(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0	0	0	0	0	0	0	0
2013.06.25 - 2014.06.24	0	0	1	0	0	0	0	0
2012.06.25 - 2013.06.24	1	1	0	0	2	1	0	0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중C3(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0	0	0	0	0	0	0	0
2013.06.25 - 2014.06.24	1	1	0	0	1	1	0	0
2012.06.25 - 2013.06.24	1	1	1	1	2	1	1	1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중C4(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1	1	0	0	1	0	0	0
2013.06.25 - 2014.06.24	0	0	1	1	0	0	1	1
2012.06.25 - 2013.06.24	0	0	1	1	1	1	0	0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A종C5(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4.06.25 - 2015.06.24	221	194	1	1	65	51	157	105
2013.06.25 - 2014.06.24	333	265	1	1	112	91	221	194
2012.06.25 - 2013.06.24	457	395	1	1	125	120	333	265

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A종S(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6.25 - 2015.06.24	0	0	1	1	0	0	1	1
2013.06.25 - 2014.06.24	0	0	0	0	0	0	0	0

주)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구분	최근 1년 14.08.21 ~15.08.20	최근 2년 13.08.21 ~15.08.20	최근 3년 12.08.21 ~15.08.20	최근 5년 10.08.21 ~15.08.20	설정일 이후 07.06.25 ~15.08.20
펀드	-36.93	-15.01	-13.69	-7.64	-5.08
참조지수	-39.12	-15.75	-14.54	-9.28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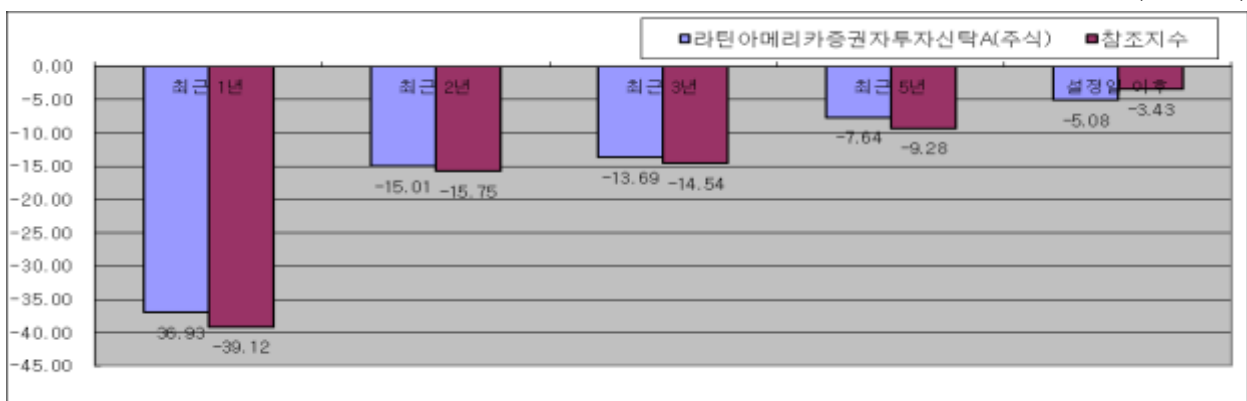
주1)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주2)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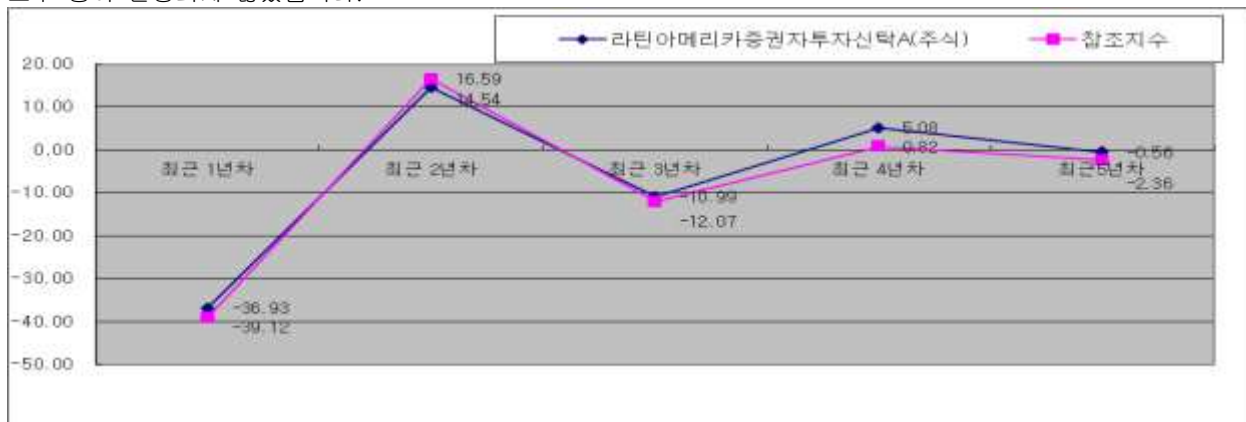
구분	최근 1년차 14.08.21 ~15.08.20	최근 2년차 13.08.21 ~14.08.20	최근 3년차 12.08.21 ~13.08.20	최근 4년차 11.08.21 ~12.08.20	최근 5년차 10.08.21 ~11.08.20
펀드	-36.93	14.54	-10.99	5.08	-0.56
참조지수	-39.12	16.59	-12.07	0.82	-2.36

주1)참조지수: MSCI EM Latin America 10/40 Index (USD)

주2)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당해 투자신탁

(2015.06.24 현재/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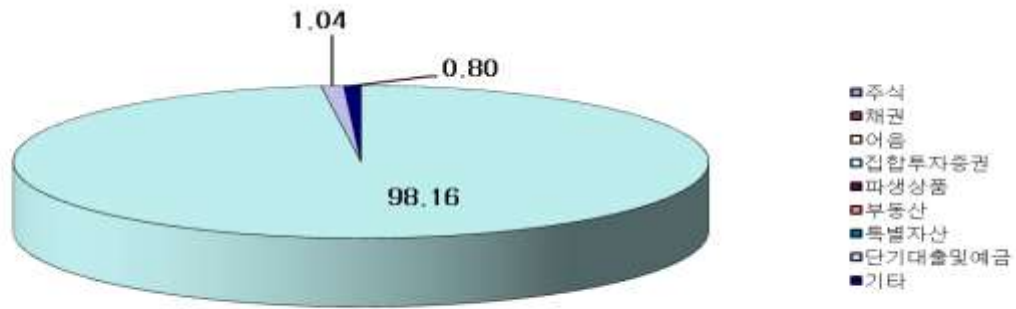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390	0	0	0	0	0	4	3	398
	(0.0)	(0.0)	(0.0)	(98.2)	(0.0)	(0.0)	(0.0)	(0.0)	(0.0)	(1.0)	(0.8)	(100.0)
합계	0	0	0	390	0	0	0	0	0	4	3	398
	(0.0)	(0.0)	(0.0)	(98.2)	(0.0)	(0.0)	(0.0)	(0.0)	(0.0)	(1.0)	(0.8)	(1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15.6.24 현재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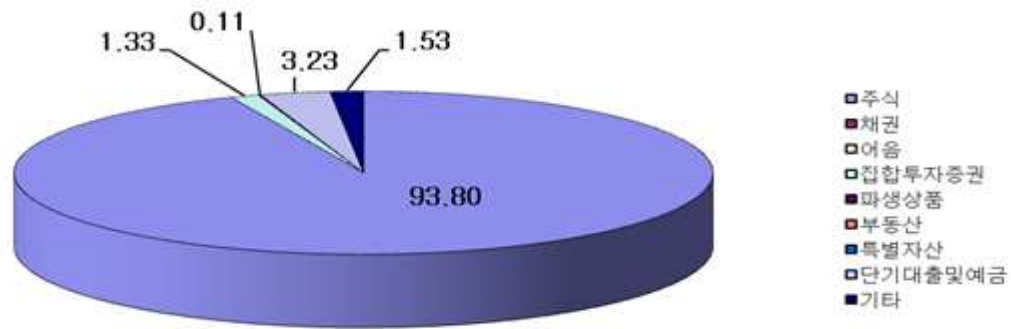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0	4	0	0	0	0	6	6	16
	(0.0)	(0.0)	(0.0)	(0.0)	(24.7)	(0.0)	(0.0)	(0.0)	(0.0)	(37.1)	(38.2)	(4.0)
BRL	122	0		0	0	0		0		0	0	12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
CLP	15	0		0	0	0		0		0	0	15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
USD	181	0		0	0	-4		0		6	0	184
	(98.5)	(0.0)	(0.0)	(0.0)	(0.0)	-(1.9)	(0.0)	(0.0)	(0.0)	(3.5)	(0.0)	(46.0)
MXN	48	0		5	0	0		0		0	0	53
	(9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13.0)
PEN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COP	10	0		0	0	0		0		1	0	11
	(94.7)	(0.0)	(0.0)	(0.0)	(0.0)	(0.0)	(0.0)	(0.0)	(0.0)	(5.3)	(0.0)	(3.0)
합계	377	0	0	5	4	-4	0	0	0	13	6	402
	(93.8)	(0.0)	(0.0)	(1.3)	(1.0)	-(0.9)	(0.0)	(0.0)	(0.0)	(3.2)	(1.5)	(1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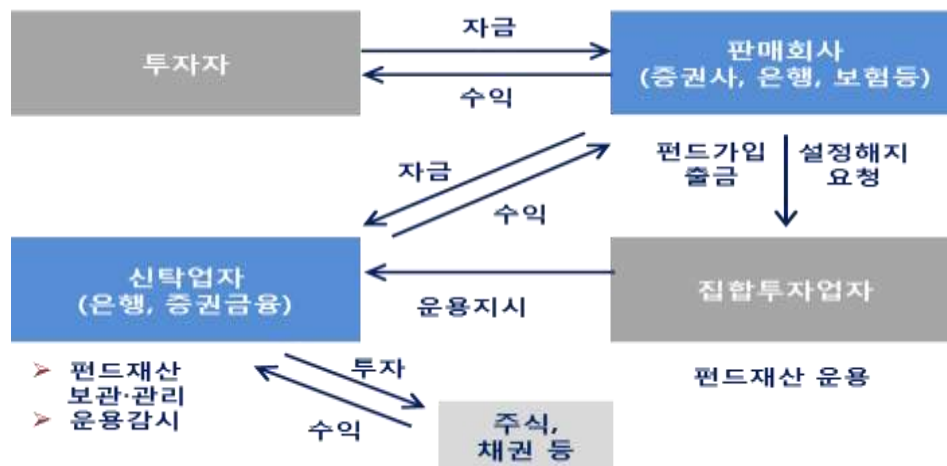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6층 (02-3783-0500, www.schroders.co.kr)
회사 연혁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억원)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4.12.31	'13.12.31	항 목	14.12.31	13.12.31
유동자산	297	428	영업수익	272	246
고정자산	28	25	영업비용	228	189
자산총계	325	454	영업이익	44	57
유동부채	45	36	영업외수익	0	0
고정부채	1	1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46	37	경상이익	44	57
자본금	100	100	특별이익		
이익잉여금	179	316	특별손실		
자본조정			법인세	10	12
자본총계	279	416	당기순이익	34	45

라. 운용자산 규모 (2015.8.20 현재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3,811	3	487	3,162	0	0	0	0	0	27,465

* 상기 운용자산규모는 순자산 총액 및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일임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 당 편 드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업 무 위 탁 범 위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 위탁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회사 개요]

해 외 위 탁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주 소 및 연 락 처	31 Gresham Street, London EC2V 7QA, United Kingdom 전화: 020 7658 6000 팩스: 020 7658 6965
주 요 주 주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100%)
회 사 연 력	-1818 : J. Henry Schroder Co. Ltd 설립 -1954 : J. Henry Schroder Co. Ltd의 투자부서 설립 -1959 : 모회사인 Schroders Plc의 상장 -1985.3.7 : Somerled Limited 설립 -1985.6.17 : Somerled Limited에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상호변경
자 본 금	GBP7천만
주 요 주 주 현 황	Schroder Administration Limited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1.12.31.	2012.12.31.	계정과목	2011.12.31.	2012.12.31.
총 자산	383.2	376.0	영업이익/(손실)	36.1	35
총 부채	-257.2	-228.0	세전 이익	66.2	55.8
자기자본	126.0	148.0	세후 이익	54.1	43.1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 (02-3455-2515)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A.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및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C.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80-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시행령제217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증권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인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2015.1.1.시행)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3)과 (4)에 해당되는 투자신탁에 대해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격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
 - 그 밖에 법시행령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법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그 밖에 법시행령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⑨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거래 비용의 유리성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과 효율성 -리서치, 시장정보 제공능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 현황 등 발생 가능한 크레딧리스크 관리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 투자신탁과 관련되어 사용될 것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직접적인 현금 등 지급 바.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선정방법 운용역,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 선정 결과는 분기 중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며, 분기말 리뷰를 거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탁보수	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